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년월일	1991. 11. 6		접수번호	1
청원인	주 소	남구 망미2동 213-51(1/5)	성명	이학수외 283인
소개의원		김영우	처리주관	도시정비과
전명	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			

요지

- 1986년 건설부 고시 제155호 및 1988년 부산직할시 고시 제379호로 지적승인된, 수영천변 강변도로 확장(기존 15미터에서 30미터) 결정 고시에 의거,
- 15미터 추가 확장도로가 하천부지쪽이 아닌 주택가쪽으로 개설될 시에는 300여세대 철거민 이주에 따른 보상비, 이주대책비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,
- 또한 각종 허가 규제등으로 주민이 재산상, 정신상의 큰 손해를 입게 되고 전축허가가 나지 않아 주변에 무허가 판자집, 공장등의 난립으로 생활오수 및 공장 폐수로 인해 수영천이 크게 오염되고 있고,
- 부산시에서 강폭을 이유로 주택지쪽으로 계획선을 확장한다 하였으나 (주)대우에서 택지사용을 위해 수영강쪽으로 수천평이상의 매립지를 조성한 사실과 비교해 볼때 강폭과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되며,
- 아울러 계획도로 수정 불가시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고,
- 상기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를 분석해 볼때 15미터 확장도로는 주택지가 아닌 하천부지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.